투자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코레이트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이 투자위험 등급은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것으로 판매회사의 분류 등급과는 상이할 수 있으며, **펀드의 위험등급은 운용실적, 시장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코레이트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레이트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이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코레이트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코레이트자산운용㈜
3. 판매회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koreit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성기준일	2024년 02월 20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24년 03월 15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모집(매출) 총액]	수익증권 10조좌
7. 모집(매출) 기간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www.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koreitasset.com) 및 판매회사 본·지점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투자결정 시 유의사항

제 1 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 2 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 5 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참고] 펀드 용어정리

투자결정 시 유의사항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의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 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 보험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 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이투자설명서

작성기준일 : 2024.02.20.

코레이트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 (펀드코드: 94920)

투자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코레이트자산운용㈜는 이 투자신탁의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2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60%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여 **주식의 가격 변동위험, 시장위험 등에 따른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이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요약정보는 **코레이트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의 투자설명서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발췌·요약한 핵심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기 이전에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약정보]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을 법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합니다. 이 투자신탁은 국내주식에 자산의 60% 이상을 투자하면서, '스타성장주, 스타전환주, 스타기대주'의 발굴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나갈 예정입니다.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개방형(중도환매가능), 추가형, 종류형

투자비용

클래스 종류	투자자가 부담하는 수수료, 총보수 및 비용(연, %)					1,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 · 비용 예시(단위: 천원)				
	판매 수수료	총보수	판매 보수	동종 유형 총보수	총 보수 · 비용	1년차	2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0.5%이내	1.750	1.000	1.360	1.752	174	358	550	964	2,194
수수료선취-온라인(A-e)	납입금액의 0.5%이내	1.550	0.800	1.010	1.552	154	317	487	853	1,94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1)	-	2.250	1.500	1.570	2.250	225	461	709	1,243	2,83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	1.710	0.960	1.180	1.712	171	351	540	946	2,154

주 1) '1,000만원 투자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투자기간별 총보수·비용 예시'는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향후 투자기간별 지불하게 되는 총비용(판매수수료 +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 및 총보수비용은 일정하고,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로 가정하였습니다.

주 2) 종류 C1형이 종류 A형보다 총비용이 지속적으로 높은 펀드입니다.

주 3)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구체적인 투자비용은 투자설명서 제2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4) '동종유형 총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기준일: 2024.01.31)

투자실적 추이 (연평균 수익률)

(단위 : %)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차	최근 2년차	최근 3년차	최근 5년차	설정일이후
		2023/01/17~ 2024/01/16	2022/01/17~ 2024/01/16	2021/01/17~ 2024/01/16	2019/01/17~ 2024/01/16	

종류A	2006/01/17	9.17	-3.03	0.35	10.29	8.92
비교지수		4.07	-7.55	-6.81	3.47	3.29
수익률 변동성		16.41	19.10	17.71	20.79	20.35

주 1) 비교지수 : KOSPI 100%

주 2) 종류 A(선취판매수수료 부과)의 수익률만 대표로 기재하였으며, 다른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률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3)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집합투자기구 총비용 지급후 해당기간동안의 세전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 4)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은 해당기간 펀드의 연환산 주간수익률이 평균수익률에서 통상적으로 얼마만큼 등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수치로서, 변동성이 높을수록 수익률 등락이 빈번해 펀드의 손실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주식형)				운용 경력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박제우	1975	본부장	11개	2,295억	10.15	-2.13	10.15	-2.13	22년

주 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주식운용본부가 담당하며, 상기인은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을 주도하는 핵심적 역할의 투자운용인력(주식운용본부)입니다.

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4)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주 5) 기준일 : 2024.02.20.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투자자 유의사항은 투자설명서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참조

주요투자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이하 "투자원금액" 이라 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는 투자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있으며, 투자원금액의 손실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시장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의 직접적인 주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의 가격 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채무증권 등의 투자에 대한 이자율 위험에 노출됩니다. 신탁재산이 투자되는 국내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 등은 국내·외의 경제 상황, 이자율, 거시 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그 가치가 변화하고 또한 개별 기업의 이익 현황, 미래 성장 가능성, 영업 환경 및 재무 상황에 따라 그 가치가 등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장 위험 요소는 개

<table>
<tr><td></td><td colspan="3">
<table>
<tr><td></td><td>별 주권 및 채권 등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td></tr>
<tr><td>고난도 펀드 해당 여부</td><td>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을 일부 편입할 계획이나, 그 편입목적이 투자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내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등 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한 거래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고난도 펀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td></tr>
</table>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에 대한 세부사항은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중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매입 방법</td><td>•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기준가 매입
•15시 30분 경과 후: 3영업일 기준가 매입</td><td>환매 방법</td><td>•15시 30분 이전: 2영업일 기준가, 4영업일 지급
•15시 30분 경과 후: 3영업일 기준가, 4영업일 지급</td></tr>
<tr><td>환매 수수료</td><td colspan="3">해당사항 없음</td></tr>
<tr><td>기준가</td><td colspan="3">
<table>
<tr><td>산정방법</td><td>• 당일 기준가격 = (전일 투자신탁 자산총액 - 부채총액)/전일 수익증권 총 좌수
•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td></tr>
<tr><td>공시장소</td><td>• 서류공시: 판매회사 영업점에서 게시 및 공시
• 전자공시: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td></tr>
</table>
</td></tr>
<tr><td>과세</td><td colspan="3">• 투자자는 투자대상으로부터 발생한 이자, 배당 및 양도차익(해외주식 매매차익 포함)에 대하여 소득세 등(개인 15.4%, 내국법인 15.4%)을 부담합니다.
•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고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과 관련된 자세한사항은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전환절차 및 방법</td><td colspan="3">•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종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C 수익증권에 한합니다.
1. 종류C1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1년 이상: 종류C1 수익증권 → 종류C2 수익증권
2. 종류C2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2년 이상: 종류C2 수익증권 → 종류C3 수익증권
3. 종류C3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3년 이상: 종류C3 수익증권 → 종류C4 수익증권
4. 종류C4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로부터 4년 이상: 종류C4 수익증권 → 종류C5 수익증권
• 전환하는 경우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전환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 수익자의 매입 또는 환매청구 등에 따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당해 매입 또는 환매청구 등에 따른 절차가 처리된 이후 익영업일에 전환처리 가능
※ 수익증권의 전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r><td>집합투자업자</td><td colspan="3">코레이트자산운용㈜ (대표번호: 02-3774-6114 /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itasset.com)</td></tr>
<tr><td>모집기간</td><td>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td><td>모집・매출총액</td><td>투자신탁의 수익증권(10조좌)</td></tr>
<tr><td>효력 발생일</td><td>2024년 03월 15일</td><td>존속기간</td><td>별도로 정해진 계약기간 없음</td></tr>
<tr><td>판매회사</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www.koreit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참고</td></tr>
<tr><td>참조</td><td colspan="3">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td></tr>
</table>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 선취형(A)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집합투자증권으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낮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보수체감 (CDSC)	판매수수료미징구형(C) 집합투자기구이며 이연판매보수(CDSC) 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전환 청구없이 집합투자증권의 보유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판매보수가 낮은 종류의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됩니다.
	무권유 저비용(G)	별도의 투자권유 없이 집합투자기구를 매수하는 경우 일반적인 창구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보다 낮은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적용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기관(F)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시행령 제 10 조 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랩(W)	가. 가. 판매회사의 일임형랩어카운트계좌의 자산으로 동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 나. 법 제 105 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다. 보험업법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개인연금(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집합투자업자(www.koreit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oreitasset.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koreitasset.com)

제1부 모집 및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코레이트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	94920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54070
수수료선취-온라인(A-e)	1905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9492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9492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9492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9492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96567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9492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9492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94927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AP268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BP13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BP13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CB77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CB77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CB77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CB779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주식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추가형(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 특수형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투자신탁)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미해당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2부의 내용 중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용어에 관한 사항은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10조 좌 (1좌당 1원)

주 1) 모집기간이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이 가능합니다.

주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3) 모집(판매) 예정금액이 줄거나 모집(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시될 예정입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이 가능합니다.

나. 모집장소: 판매회사 본・지점

다. 모집절차 및 방법: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주 1)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협회(www.kofia.co.kr) 및 집합투자업자(www.koreit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2) 모집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의 내용 중 '매입, 환매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종류형 명칭)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코레이트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	94920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54070
수수료선취-온라인(A-e)	1905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9492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9492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9492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9492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96567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9492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9492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94927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AP268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BP13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BP13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CB773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CB77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CB77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CB779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변경시행일	주요내용
2008. 09. 11.	운용전문인력 변경(이복상→주식운용팀)
2008. 09. 24.	투자신탁명칭 변경(마이애셋징기스칸주식형투자신탁→트리플스타주식투자신탁), 채권 및 어음 투자등급(신용등급) 상향조정, 판매회사 보수 인하
2008. 10. 22.	장기주식형 적립식 세제혜택 적용
2009. 03. 02.	일반사무관리회사 변경(SC 제일펀드서비스→외환펀드서비스)
2009. 03. 30.	운용전문인력 변경[주식운용팀(한상수, 김우식)→한상수]
2009. 05. 0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적용으로 투자신탁명칭 변경 (마이트리플스타주식투자신탁 → 마이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
2009. 05. 25.	- 종류형 투자신탁으로 변경 - 모집예정금액(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 변경
2010. 01. 11.	종류 A-e 수익증권 신설 및 일부 내용 업데이트
2010 .10. 25.	판매보수 인하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반영

2011. 03. 02.	운용전문인력 변경[한상수→전성문]
2011. 05. 04.	운용전문인력 변경[전성문→김준기]
2014. 01. 16.	운용전문인력 변경[김준기→용상민]
2014. 02. 28.	종류 S 수익증권 신설
2016. 03. 14.	운용전문인력 변경[용상민→이한영]
2016. 07. 02.	투자위험등급 체계 변경 [5 등급 중 1 등급 → 6 등급 중 2 등급]
2016. 07. 30.	설정환매 기준시간 변경 (15 시 → 15 시 30 분)
2016. 12. 01.	"사명변경"으로 투자신탁명칭 변경 (마이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 → 코레이트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
2017. 04. 29.	종류 AG, 종류 CG 수익증권 신설
2017. 07. 14.	운용전문인력 변경[이한영→김상우]
2018. 03. 30.	환매수수료 폐지
2018. 07. 02.	- 종류 C-P, C-Pe, C-P2, C-P2e, 수익증권 신설 - 운용인력 변경[김상우→최예열]
2019. 09. 18.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및 한글 클래스 명칭 부기 반영
2020. 03. 13.	정기갱신
2021. 03. 11.	정기갱신
2021. 07. 08..	- 운용전문인력 변경[최예열→곽영은] -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 반영 - 전자증권법 시행 반영
2021. 10. 29.	운용전문인력 변경[곽영은 → 박제우]
2022. 03. 15	정기갱신
2023. 03. 16	정기갱신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사항 반영 외
2024. 03. 15	정기갱신, 기준일에 따른 업데이트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집합투자기구는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령 또는 집합투자규약에 의거하여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코레이트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19층(역삼동, 삼원타워) 02-3774-6114

주 1)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부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투자운용인력

가. 책임투자운용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집합투자기구 규모	
박제우	1975	본부장	11개	2,295억	▪ 2011. 01. ~ 2014. 03. : NH-아문디자산운용 AI운용팀장 ▪ 2014. 08. ~ 2019. 08. : 키움투자자산운용 ETF팀장 ▪ 2019. 08. ~ 2021. 07. : 골든브릿지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장 ▪ 2021. 08. ~ 현재 : 코레이트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본부장

주 1)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을 주도하는 핵심적 역할의 책임투자운용인력입니다.
주 2) 기준일 : 2024.02.20

나. 최근 3년간 책임투자운용인력의 변동 여부

책임운용역	운용기간
최예열	2018. 07. 02. ~ 2021. 07. 07.
곽영은	2021. 07. 08. ~ 2021. 10. 28.
박제우	2021. 10. 29. ~ 현재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투자신탁, 증권(주식형), 추가형, 개방형, 종류형

나. 종류형 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수수료, 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수종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종류의 구분에 관계없이 운용은 통합하여 이루어집니다. 이 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매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됨
수수료선취-온라인(A-e)	온라인(Online) 가입자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됨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가입제한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종류C1수익증권에 1년 이상 가입 시 자동전환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종류C2수익증권에 1년 이상 가입 시 자동전환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종류C3수익증권에 1년 이상 가입 시 자동전환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종류C4수익증권에 1년 이상 가입 시 자동전환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온라인(On-Line) 가입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가. 판매회사의 일임형랩어카운트계좌의 자산으로 동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 나. 법 제 105 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다. 보험업법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시행령 제 10 조 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판매수수료는 없고 판매보수를 받는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가입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판매 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판매 전용

주 1) 전문투자자: 법 제9조 제5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
주 2) 보수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의 내용 중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자산의 6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권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주권 등의 가치 상승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투자대상의 종류	투자한도	투자대상 조건
주식	60%이상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출자증권과 법 제4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 제15항 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 등에 한한다)
채권	40%이하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에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 저당증권은 제외한다)
어음	40%이하	법 제4조 제3항의 기업어음증권(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및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신용등급이 A2- 이상인 것
자산유동화증권	40%이하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주권 및 채권 관련 장내파생 상품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10% 이하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지수선물, 주가지수옵션, 주식옵션, 코스닥지수선물, 코스닥지수옵션, CD금리선물, 통안증권금리선물, 국채선물 및 국채선물옵션(이하 "주식및채권관련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금리스왑거래	채권 또는 채무증서 총액의 100%이하	
집합투자증권 등	5%이하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법 제18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및 법 제196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
	30%이하	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증권의 대여 주1)	증권총액의 50%이하	
환매조건부 매도	채권총액의 100분의 50이하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단기대출, 금융기관에의 예치	수익증권의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단기대출은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금융기관에의 예치는 만기 1년 이내인 상품에 한한다.
환매조건부 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

주1)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 수익률 증진: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차수수료 수익을 추구
-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 대여 가능

◈ 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1의 기간 또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규약 제18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회계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계약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제18조 제1항 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투자신탁의 일부 해지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합투자규약 제18조제5호 내지 제9호, 제19조 제2호 내지 제7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적용 제외
단기대출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는 제외한다)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	
동일종목 투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합니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 자산총액의 100%까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 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및 직접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간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및 마목 내지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 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 제 10조의2에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사채 중 후순위 사채권 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수익증권 중 후순위 수익증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 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 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최초설정일로부터 1개월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총액비중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증권시장별로 또는 해외 증권시장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 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 개월간 적용한다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으로 동일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 총수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파생상품	• 동일법인이 발행한 증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거래에 따르는 위험의 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행위	최초설정일로부터 1 개월간
	•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0%를 초과하는 행위. 다만,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위험평가액은 집합투자기구의 설정일부터 매 1월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그 매 1월(매1월이 되는 날 전에 집합투자기구가 해지되는 경우에는 그 해지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의 매일의 위험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 법 시행령 제80조 제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계열회사 발행주식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 초과하여 계열회사가 발행한 주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권의 시가총액비중의 합이 10%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계열회사가 발행한 전체 주권가액을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투자가능	
후순위채 투자	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후순위채권에 투자하는 행위	

주 1) 자세한 사항은 집합투자규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편입한 집합투자증권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운용전략 및 투자방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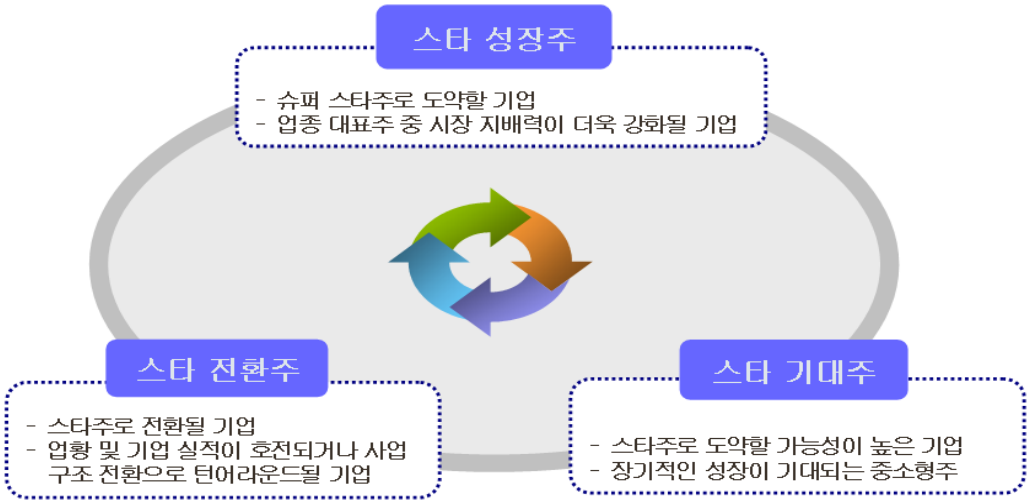

■ 스타 성장주의 발굴과 운용 전략

◈업종 대표주로 시장 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기업에 투자

- 산업의 성장성, 산업 내 투자기업의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장기적 의사결정

- 매출액이나 이익에 있어서의 성장이 전망되지만 Valuation 지표(P/E, P/B, EV/EBITDA 등)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기업
- 저 평가된 우량 개별종목 투자(잉여현금흐름이 안정적으로 창출되며, 자산가치 및 수익가치 대비 저 평가된 종목군)
- 예비 후보군에 대한 Screening 및 Valuation에 근거한 중·장기 적정 가격을 산출
- 매수 후, 업황 및 영업 실적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여 투자의사결정에 반영

■ 스타 전환주의 발굴과 운용 전략

◈ 업황 및 기업 실적이 호전되거나, 사업구조 전환으로 턴어라운드 될 기업

- 업황 사이클의 변화나 기업의 사업구조 변화 등 기업의 질적 변화를 기준으로 이익 개선 기업 선정
- 주력 사업 재조정 및 경쟁력 강화 등으로 인한 턴어라운드 기업
- 재무구조 개선, 부실자산 및 계열사 처분 등의 구조조정 기업
- 적자 폭의 지속적 축소 및 잉여현금 창출로 인한 흑자 전환 기대 기업

■ 스타 기대주의 발굴과 운용전략

◈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형주

- 현재는 실적과 규모가 동종 업종 평균에 미달되지만, 핵심 경쟁력 보유로 향후, 고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에 장기 투자
- 신기술 보유종목: 환경, 바이오, 신소재 등
- 재무제표의 안정성 고려(부채비율, 이자보상배율 등)

(2) 위험관리 전략

- 제반 운용규정 및 투자지침의 철저한 준수를 통하여 사전적 운용 리스크 예방
- 시장동향 및 종목별 거래 분석을 통하여 포트폴리오 구성자산의 자산 건전성 제고

(3) 참고지수(벤치마크): KOSPI 100%

주 1) 상기의 참고지수는 신탁재산의 대부분을 지분증권 등에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속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 2)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비교 등을 위해서 위와 같은 참고지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새로운 참고지수의 등장에 따라 이 참고지수는 변경될 수 있고, 변경 시 집합투자업자 및 판매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된 참고지수(벤치마크)와 변경 사유를 공시할 예정입니다.

(4) 적극적인 매매전략의 구사여부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적극적인 매매전략을 구사하여 수익을 추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매매전략은 그렇지 아니한 집합투자기구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보다 많은 비용(매매 수수료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기구의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집합투자기구는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국내에서 발행되어 국내에서 거래되는 상장주권에 투자하고, 40% 이하를 채권 및 어음 등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로서 주권 및 채권 등의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및 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에서 투자한 주권 및 채권 등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 수익이 발생할 수 있으나, 반대로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 등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이 집합투자기구와 연관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예금을 판매하는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 상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아래의 투자위험은 상품 가입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내용
시장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의 직접적인 주 대상이 되는 지분증권의 가격 하락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채무증권 등의 투자에 대한 이자율 위험에 노출됩니다. 신탁재산이 투자되는 국내 지분증권 및 채무증권 등은 국내·외의 경제 상황, 이자율, 거시 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라 그 가치가 변화하고 또한 개별 기업의 이익 현황, 미래 성장 가능성, 영업 환경 및 재무 상황에 따라 그 가치가 등락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시장 위험 요소는 개별 주권 및 채권 등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위험관리(헤지)와 초과수익을 위해 선물, 옵션과 같은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파생상품은 적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지분증권에 직접 투자하는 것보다 높은 위험을 가집니다. 따라서, 파생상품의 투자를 통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신탁재산의 가치하락을 크게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금리변동 위험	투자적격 등급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진 채무증권에 투자할 예정이나, 투자적격등급의 채무증권 또한 리스크가 존재하고, 채무증권 금리의 변동에 따라 채무증권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무증권의 가격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무증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고난도 펀드 해당 여부	이 투자신탁은 파생상품을 일부 편입할 계획이나, 그 편입목적이 투자위험을 헤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내파생상품을 매매하는 등 금융투자협회에서 정한 거래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고난도 펀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분	내용
경제여건 및 시장현황 위험	신탁재산의 운용에 있어 예상치 못한 정치, 경제상황 및 정부의 조치, 세제의 변경 등에 따라 신탁재산 운용 및 투자자의 수익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분	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의 규모를 감안할 때, 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탁재산의 가치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 가치 변동 위험	이 집합투자기구는 환매청구일로부터 제2영업일(오후 3시 이후 환매청구 시 제3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환매대금을 지급하므로 환매청구 시와 환매대금지급일까지의 기간 동안 투자신탁재산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 위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가 연기되거나, 일정기간 환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본 투자설명서 제2부 중 "매입, 환매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해지 위험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 미만이거나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증권의 대여 또는 차입 거래 위험	증권의 대여 또는 차입 거래가 일어나는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이 투자신탁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이 23.915%이므로, 6개의 투자위험등급 중 위험도가 높은 2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지분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주식형)로 주식시장의 하락 등에 따른 손실위험에 노출되므로 주식가격의 변동성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인지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상기의 투자위험등급은 추후 매결산시마다 수익률 변동성을 재산정하게 되며, 이 경우 투자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익률 변동성의 의미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이란 투자기간 동안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평균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서, 투자신탁의 위험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 값이 클수록 미래 수익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투자신탁의 위험이 커짐을 의미합니다

※ 위험등급 분류 사유

수익률 변동성(표준편차)이란 투자기간 동안 투자신탁의 수익률이 평균수익률과 대비하여 변동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한 통계량으로서, 투자신탁의 위험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수익률 변동성 (표준편차) 값이 클수록 미래 수익률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여 투자신탁의 위험이 커짐을 의미합니다.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위험등급	분류기준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 변동성(연환산)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25%초과
2등급	높은 위험	15%초과 25%이하
3등급	다소 높은 위험	10%초과 15%이하
4등급	보통 위험	5%초과 10%이하
5등급	낮은 위험	0.5%초과 5%이하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0.5%이하

주 1)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수익률 변동성 (예: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추후 실제 수익률 변동성으로 등급분류기준이 변경되면서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일에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종류별 매입자격

이 집합투자기구의 매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매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류	매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됨
수수료선취-온라인(A-e)	온라인(Online) 가입자로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됨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가입제한 없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종류C1수익증권에 1년 이상 가입 시 자동전환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종류C2수익증권에 1년 이상 가입 시 자동전환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종류C3수익증권에 1년 이상 가입 시 자동전환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종류C4수익증권에 1년 이상 가입 시 자동전환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온라인(On-Line) 가입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가. 판매회사의 일임형랩어카운트계좌의 자산으로 동펀드에 가입하는 투자자 나. 법 제 105 조의 규정에 의해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업자 다. 보험업법 제 108 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계정의 신탁업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가. 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외국법령에 의한 것으로서 집합투자기구의 성질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나. 법시행령 제 10 조 제 2 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 1-4 조에서 정하는 기관투자자 또는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외국의 법령상 이에 준하는 자를 포함한다)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으로서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집합투자증권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선취판매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투자자가 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문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펀드 매수를 요청하는 등 금융기관등으로부터 투자권유 없이 펀드를 매수하는 투자자에 한하며, 판매수수료는 없고 판매보수를 받는 경우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가입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한 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판매 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판매 전용

주 1) 전문투자자: 법 제9조 제5항 및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국가, 한국은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주권상장법인 등
주 2) 보수 및 수수료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2부의 내용 중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⑶ 매입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매입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아래와 같으며,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① 오후 3시 30분 이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의 다음 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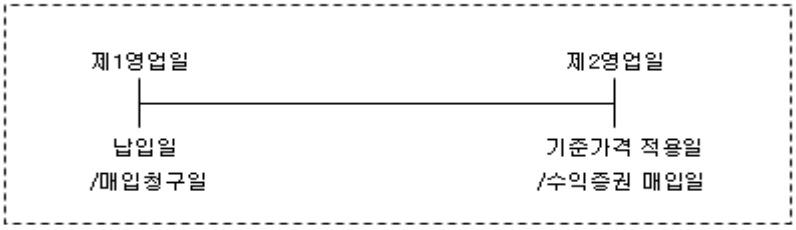

② 오후 3시 30분 이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납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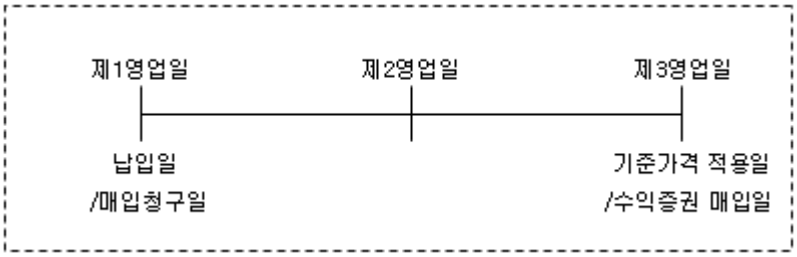

③ 이 집합투자기구를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4) 매입청구의 취소(정정)

이 집합투자기구의 매입청구 취소(정정)는 매입청구일 15시30분(오후 3시30분) 이전 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30분(오후3시30분) 경과 후 매입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 까지만 매입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선취판매수수료

이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A 및 종류 A-e, 종류 AG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종류 A및 종류 A-e, 종류 AG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시점에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 시 적용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0.5%입니다.

나. 환매

(1) 이 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일의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회사가 해산 ▪ 허가 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 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환매청구 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① 오후 3시 30분 이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2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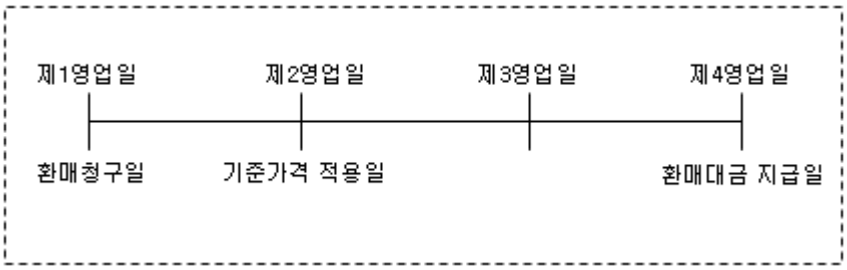

② 오후 3시 30분 이후 환매를 청구하는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당해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4영업일에 관련세금 등을 공제한 후 환매대금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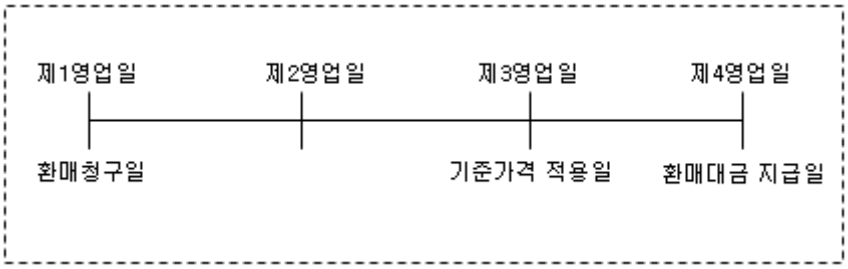

주 1)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3) 환매수수료

해당 사항 없습니다.

(4) 환매청구의 취소(정정)

이 집합투자기구의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환매청구일 15시30분(오후 3시30분) 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다만, 15시30분(오후 3시30분) 경과 후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당일 중 판매회사의 영업가능 시간까지만 환매의 취소 또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5) 수익증권의 일부환매

수익자는 보유한 수익권 좌수 중 일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수익증권의 일부에 대한 환매를 청구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잔여 좌수에 대하여는 새로운 수익증권을 교부합니다.

(6) 수익증권의 환매제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환매청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전전영업일 (15시 30분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에는 전전전영업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 등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7) 수익증권의 환매연기

법령과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환매연기사유

① 집합투자재산의 처분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뚜렷한 거래부진 등의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의 폐쇄•휴장 또는 거래정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할 수 없는 경우
-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부도발생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재산을 처분하여 환매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시가가 없어서 환매청구에 응하는 경우에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대량의 환매청구에 응하는 것이 투자자 간의 형평성을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투자회사 등이 해산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④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8) 수익증권의 부분환매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산(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② 부분환매가 결정된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날(환매연기총회에서 부분환매를 결의한 경우에는 그 날)의 전일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합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익자는 이 집합투자기구 수익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집합투자기구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④ 집합투자업자가 부분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수익자,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 전환

전환형 집합투자기구가 아니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기준가격 산정

수익증권 매입 및 환매거래 시 기준이 되는 가격 → 기준가격 = (펀드의 순자산 총액 / 총 좌 수) × 1,000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 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 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종류 수익증권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 간 판매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종류 수익증권별로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산정주기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포함)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 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공시주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 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공시방법 및 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koreitasset.com), 판매회사,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에 게시합니다.

주 1)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1)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는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에 따라 평가하되, 평가기준일에 거래실적이 없어 공정한 가치의 산정이 곤란한 자산, 시장매각이 제한되거나 매각이 곤란한 자산은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정하는 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 의한 방법에 따라 평가위원회(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합니다.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와 절차에 관한 기준(집합투자재산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①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의 일관성 유지에 관한 사항
③ 집합투자재산의 종류별로 해당 재산의 가격을 평가하는 채권평가회사를 두는 경우 그 선정 및 변경과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의 적용에 관한 사항 등.

(3)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구분	내용
상장주권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권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유가증권시장 등에서 발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방식으로 산정된 가격으로 평가
파생결합증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 매월 10일 이상 시세가 형성된 채권으로서 평가기준일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비상장채권	(위 상장채권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상장채권 포함)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기업어음 또는 금융기관발행채무증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 또는 등록된 집합투자증권은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기구는 이연판매보수(CDSC)프로그램에 따라 판매보수를 적용하는 투자신탁으로 수익자의 전환 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 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이 1년 이상인 경우, 아래에서 정하는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됩니다. 단, 투자신탁의 최초 가입 시에는 종류 C1 수익증권으로 발행합니다. 자세한 적용기준 및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익증권 보유기간	1년 차 (최초가입)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수익증권	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	종류 C5 수익증권
총보수 (기타비용 제외)	연 2.25%	연 2.07%	연 1.93%	연 1.81%	연 1.71%

※ 종류 A, A-e, AG, C-e, CG, C-W, C-F, C-P, C-Pe, C-P2, C-P2e, S, 수익증권은 전환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종류형	선취 판매수수료	후취 판매수수료	환매 수수료
수수료율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납입금액의 0.5%	없음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A-e)			
	수수료선취-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A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C5)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무권유저비용(CG)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C-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3년 미만 환매 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부과기준		납입시	환매시	환매시

주 1) 선취판매수수료 차등부과 기준 및 내용

이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A 및 종류 A-e, 종류AG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종류 A 및 종류 A-e, 종류 AG수익증권을 매입하는 시점에 선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선취판매수수료는 납입금액(수익증권 매수 시 적용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에 매수하는 수익증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0.5%입니다.

주 2) 후취판매수수료 차등부과 기준 및 내용

이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S 수익증권의 판매행위에 대한 대가로 종류 S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수익자로부터 후취판매수수료를 부과합니다. 후취판매수수료는 3년 미만 환매 시에 환매금액 (수익증권 환매시 적용하는 기준가격에 환매하는 수익권 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의 0.15%범위 내에서 부과합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펀드명 (종류)	지급비율(순자산총액의 %, 연)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신탁업자	일반사무관리	보수합계	개별기타비용	개별총보수비용	동종유형총보수	합성기타비용	총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증권거래비용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0.70	1.50	0.03	0.02	2.25	0.00	2.25	1.57	0.00	2.25	0.873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0.70	1.32	0.03	0.02	2.07	0.00	2.07	1.57	0.00	2.07	0.904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0.70	1.18	0.03	0.02	1.93	0.00	1.93	1.57	0.00	1.93	0.869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0.70	1.06	0.03	0.02	1.81	0.00	1.81	1.57	0.00	1.81	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0.70	0.96	0.03	0.02	1.71	0.0027	1.7127	1.18	0.0027	1.7127	0.8762
수수료선취-온라인(A-e)	0.70	0.80	0.03	0.02	1.55	0.0023	1.5523	1.01	0.0023	1.5523	0.882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0.70	0.03	0.03	0.02	0.78	0.00	0.78	0.00	0.00	0.78	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0.70	0.96	0.03	0.02	1.71	0.0025	1.7125	1.57	0.0025	1.7125	0.8726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0.70	0.35	0.03	0.02	1.10	0.0011	1.1011	0.00	0.0011	1.1011	0.8728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0.70	1.00	0.03	0.02	1.75	0.0028	1.7528	1.36	0.0028	1.7528	0.875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0.70	0.30	0.03	0.02	1.05	0.00	1.05	0.00	0.00	1.05	0.9517
지급시기	매 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		사유 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회계연도(2022.01.17~2023.01.16)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 및 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3)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년도(2022.01.17~2023.01.16)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4)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일괄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1,000만원 투자시 수익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

(단위 : 1,000원)

펀드명(종류)	투자기간	1 년차	2 년차	3 년차	5 년차	10 년차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74	358	550	964	2,19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74	358	550	964	2,194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54	317	487	853	1,94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54	317	487	853	1,94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C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25	461	709	1,243	2,830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25	461	709	1,243	2,83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C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07	424	653	1,144	2,60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207	424	653	1,144	2,60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C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93	396	608	1,066	2,42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93	396	608	1,066	2,42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C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81	371	571	1,000	2,27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81	371	571	1,000	2,27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보수체감(C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71	351	540	946	2,15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71	351	540	946	2,154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71	351	540	946	2,15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71	351	540	946	2,15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기관(C-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78	160	246	431	98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78	160	246	431	981
수수료후취- 온라인슈퍼(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10	226	347	608	1,385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10	226	347	608	1,385
수수료미징구-온라인 -퇴직연금(C-P2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105	215	331	580	1,32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피투자 집합투자기구 보수 포함)	105	215	331	580	1,321

주 1) 수익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 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수익자 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신탁보수는 신탁재산의 순자산가치(NAV)변동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주 3) 종류 C1형이 종류 A형보다 총비용이 지속적으로 높은 펀드입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금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합니다. 또한, 투자신탁 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 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 이후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 귀속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재산에 귀속되는 이자, 배당 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회사존립기간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기구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투자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과표기준가격을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집합투자기구 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무증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권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 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의 영업점,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하는 날 및 회사존립기간을 연장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집합투자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전자증권법 제30조에 따른 계좌간 대체의 등록에 의한 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 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 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3) 과세상 투자자에게 불리한 사항

국내 상장주권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상장주권 등의 매매 및 평가손실이 채권이자, 주권배당, 비상장주권 평가, 환차익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4) 투자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 (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8%, 지방소득세 3.8%)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1.4%)의 세율로 원천징수(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게 됩니다.

(5)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내용
납입 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 이라 한다)
수령 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 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 만원 이내 세액공제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단,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 천 500 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 천 500 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공제한도 상향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전환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환금액의 10% 또는 300 만원 (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 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중 적은 금액에 대해 추가 세액공제 가능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 한도	1,200 만원(공적연금소득,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제외) 연금소득이 1,200 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함. (분리과세 선택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연금 외 수령 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
해지 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 사유	- 천재지변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소득의 제한은 받지 아니한다)으로 한정]이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가입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 66 조 제 1 항 제 2 호의 재난으로 15 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 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 (나이에 따라 변경, 지방소득세 포함)
연금 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과세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 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① 세액공제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 +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900 만원 중 적은 금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 천 500 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해당 연도의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 만원 이내의 금액 +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

액)과 9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6.5%(지방소득세 포함)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공제한도 상향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납입액부터 적용)

②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③ 연금 인출 방식에 따른 과세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연금 외 수령의 경우 과세체계가 다릅니다. 또한 연금 수령 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은 연간 1,200만원 한도 내에서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도 종합과세 또는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 중 선택 가능합니다. (분리과세 선택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분부터 적용)

※ 퇴직연금제도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금세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의 '연금세제안내' 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본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관한 내용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 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법인 및 감사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16기(2021.01.17. ~2022.01.16.)	회계감사 면제	해당 없음
제17기(2022.01.17. ~2023.01.16.)	회계감사 면제	해당 없음
제18기(2023.01.17. ~2024.01.16.)	회계감사 면제	해당 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항 목	제18기	제17기	제16기
	2024.01.16	2023.01.16	2022.01.16
운용자산	9,474,185,992	10,544,295,905	12,837,363,872
유가증권	9,459,332,527	10,525,196,560	12,789,982,705
파생상품	0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0
현금 및 예치금	14,853,465	19,099,345	47,381,167
기타 운용자산	0	0	0
기타자산	299,155,628	518,717,374	988,231,068
자산총계	9,773,341,620	11,063,013,279	13,825,594,940
운용부채	0	0	0
기타부채	198,433,056	322,806,217	1,880,461,150
부채총계	198,433,056	322,806,217	1,880,461,150
원본	9,827,869,713	12,244,300,487	11,945,133,790
수익조정금	0	0	0
이익조정금	-252,961,149	-1,504,093,425	0
자본총계	9,574,908,564	10,740,207,062	11,945,133,790
운용수익	1,058,610,669	-1,529,102,028	1,261,524,685
이자수익	557,598	574,479	330,986
배당수익	105,635,748	229,341,935	385,465,705
매매평가차손익	952,271,571	-1,759,018,442	875,327,954
기타수익	145,752	0	400,040
운용비용	88,930	0	0
관련회사보수	0	0	0

매매수수료	0	0	0
기타비용	88,930	0	0
당기순이익	1,058,521,739	-1,529,102,028	1,261,524,685
매매회전율	423	438	281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 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

주 3)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원]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해연도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 (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1,246,201	39,813,743,712	1,413,949	42,732,447,706	10,105,576,179	423	-

*동종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의 전체의 평균 매매회전율을 의미합니다.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원]

구분	당해 연도			전년도		
	거래금액(A)	거래비용		거래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83,282,246,563	88,875,075	0	97,842,732,771	115,956,296	0
주식이외의 증권	0	0	0	166,862,553	236,837	0
합 계	83,282,246,563	88,875,075	0	98,009,595,324	116,193,133	0

*주식 중개수수료 등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기재하되 장외 채권거래와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의 사유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렵거나 부동산 등과 같이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항목(수익적지출 등 비용으로 산정되는 항목은 기재)은 작성 생략 가능합니다.

나. 대차대조표

(단위: 원)

항 목	제18기	제17기	제16기
	2024.01.16	2023.01.16	2022.01.16
운용자산	9,474,185,992	10,544,295,905	12,837,363,872
현금및예치금	14,853,465	19,099,345	47,381,167
현금및현금성자산	14,853,465	19,099,345	47,381,167
유가증권	9,459,332,527	10,525,196,560	12,789,982,705

지분증권	9,459,332,527	10,525,196,560	12,656,533,035
수익증권	0	0	133,449,670
기타자산	299,155,628	518,717,374	988,231,068
매도유가증권미수금	248,028,723	362,200,859	784,557,329
미수이자	17,425	25,184	15,038
미수배당금	51,109,480	156,491,331	203,658,701
자 산 총 계	9,773,341,620	11,063,013,279	13,825,594,940
기타부채	198,433,056	322,806,217	1,880,461,150
매수유가증권미지급금	197,755,220	322,706,283	759,897,858
해지미지급금	677,836	99,934	5,889,252
미지급이익분배금	0	0	1,114,674,040
부 채 총 계	198,433,056	322,806,217	1,880,461,150
원 본	9,827,869,713	12,244,300,487	11,945,133,790
이익잉여금	-252,961,149	-1,504,093,425	0
자 본 총 계	9,574,908,564	10,740,207,062	11,945,133,790
부채 및 자본 총계	9,773,341,620	11,063,013,279	13,825,594,940
총좌수			
코레이트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	9,827,869,713	12,244,300,487	11,945,133,79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11,734,464	17,042,196	17,354,39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0	8,648,723	1,908,76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8,134,250	2,930,202	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0	0	2,916,18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1,412,956,463	2,606,975,075	2,569,942,241
수수료선취-온라인(A-e)	291,943,928	338,976,194	344,840,96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619,330,837	685,036,547	625,753,438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50,680,092	149,312,418	35,829,913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7,741,558,557	8,605,429,676	8,500,808,05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1,000	0	0
기준가격			
코레이트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	974.26	877.16	1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931.06	857.02	1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1000.00	858.76	1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1000.00	919.40	1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1000.00	1000.00	10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941.12	861.75	1000.00

수수료선취-온라인(A-e)	944.16	863.17	1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1000.00	1000.00	10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941.11	861.74	1000.0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952.85	867.24	1000.00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940.35	861.38	10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1000.00	0.00	0.00

다. 손익계산서

(단위 : 원)

항 목	제18기	제17기	제16기
	2023.01.17 ~ 2024.01.16	2022.01.17 ~ 2023.01.16	2021.01.17 ~ 2022.01.16
운용수익(운용손실)	1,058,610,669	-1,529,102,028	1,261,524,685
투자수익	106,193,346	229,916,414	385,796,691
이자수익	557,598	574,479	330,986
배당금수익	105,635,748	229,341,935	385,465,705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3,379,387,447	2,138,167,582	3,650,722,739
지분증권매매차익	2,375,010,139	2,039,466,461	3,380,309,725
지분증권평가차익	1,004,377,308	98,701,121	270,413,014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2,427,115,876	3,897,186,024	2,775,394,785
지분증권매매차손	1,715,552,557	2,815,986,798	1,829,379,940
지분증권평가차손	711,563,319	1,081,199,226	946,014,845
기타운용수익	145,752	0	400,040
운용비용	88,930	0	0
기타운용비용	88,930	0	0
당기순이익(당기순손실)			
코레이트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	1,058,521,739	-1,529,102,028	1,261,524,68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1,062,590	-2,764,917	247,31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594,486	-857,398	97,84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63,089	301,189	952,15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0	-164,391	544,856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154,754,228	-317,253,512	188,129,410
수수료선취-온라인(A-e)	30,558,318	-46,490,172	44,836,51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53,778,081	-93,312,869	62,005,79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8,504,593	-9,935,061	1,461,924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633,635,946	-1,255,016,810	715,957,17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73	0	0

좌당순이익(좌당순손실)			
코레이트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	94.93	-121.5	93.2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76.22	-138.93	27.7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98.54	-194.17	163.4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21.43	347.74	151.46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0.00	-152.97	121.41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76.89	-121.85	62.53
수수료선취-온라인(A-e)	70.57	-132.48	85.3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80.59	-137.45	81.13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82.08	-88.76	50.92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77.43	-141.05	77.26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73.00	0.00	0.00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단위: 백만 좌, 백만 원)

코레이트트리플스타증권투자신탁[주식] _운용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금액	설정 좌수	설정 금액	환매 좌수	환매 금액	좌수	금액
2021/01/17~2022/01/16	10,679	10,679	10,025	10,294	12,721	13,137	11,945	13,060
2022/01/17~2023/01/16	11,945	11,945	3,844	3,609	4,659	4,400	12,244	10,740
2023/01/17~2024/01/16	12,244	10,740	1,003	916	3,419	3,140	9,828	9,575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 말 잔고 금액은 결산 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금액	설정 좌수	설정 금액	환매 좌수	환매 금액	좌수	금액
2021/01/17~2022/01/16	1	1	19	20	2	3	17	19
2022/01/17~2023/01/16	17	17	10	9	11	10	17	15
2023/01/17~2024/01/16	17	15	4	3	9	8	12	11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 말 잔고 금액은 결산 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금액	설정 좌수	설정 금액	환매 좌수	환매 금액	좌수	금액
2021/01/17~2022/01/16	0	0	2	2	0	0	2	2
2022/01/17~2023/01/16	2	2	11	10	5	4	9	7
2023/01/17~2024/01/16	9	7	0	0	9	8	0	0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 말 잔고 금액은 결산 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금액	설정	설정	환매	환매	좌수	금액

			좌수	금액	좌수	금액		
2021/01/17~2022/01/16	17	17	0	0	22	23	0	0
2022/01/17~2023/01/16	0	0	3	3	0	0	3	3
2023/01/17~2024/01/16	3	3	8	8	3	3	8	8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 말 잔고 금액은 결산 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금액	설정 좌수	설정 금액	환매 좌수	환매 금액	좌수	금액
2021/01/17~2022/01/16	0	0	16	17	13	15	3	3
2022/01/17~2023/01/16	3	3	0	0	3	3	0	0
2023/01/17~2024/01/16	0	0	0	0	0	0	0	0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 말 잔고 금액은 결산 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기간	기간초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금액	설정 좌수	설정 금액	환매 좌수	환매 금액	좌수	금액
2021/01/17~2022/01/16	1,693	1,693	5,497	5,688	5,132	5,319	2,570	2,763
2022/01/17~2023/01/16	2,570	2,570	2,131	1,951	2,283	2,147	2,607	2,247
2023/01/17~2024/01/16	2,607	2,247	459	408	1,653	1,479	1,413	1,330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 말 잔고 금액은 결산 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수료선취-온라인(A-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금액	설정 좌수	설정 금액	환매 좌수	환매 금액	좌수	금액
2021/01/17~2022/01/16	461	461	378	390	637	668	345	371
2022/01/17~2023/01/16	345	345	100	95	132	126	339	293
2023/01/17~2024/01/16	339	293	256	231	303	279	292	276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 말 잔고 금액은 결산 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금액	설정 좌수	설정 금액	환매 좌수	환매 금액	좌수	금액
2021/01/17~2022/01/16	0	0	0	0	0	0	0	0
2022/01/17~2023/01/16	0	0	0	0	0	0	0	0
2023/01/17~2024/01/16	0	0	0	0	0	0	0	0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 말 잔고 금액은 결산 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금액	설정 좌수	설정 금액	환매 좌수	환매 금액	좌수	금액
2021/01/17~2022/01/16	689	689	12	12	284	300	626	673
2022/01/17~2023/01/16	626	626	15	13	3	3	685	590
2023/01/17~2024/01/16	685	590	13	11	79	73	619	583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 말 잔고 금액은 결산 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금액	설정 좌수	설정 금액	환매 좌수	환매 금액	좌수	금액
2021/01/17~2022/01/16	19	19	44	46	33	34	36	39
2022/01/17~2023/01/16	36	36	282	262	171	161	149	129
2023/01/17~2024/01/16	149	129	33	30	132	119	51	48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 말 잔고 금액은 결산 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금액	설정 좌수	설정 금액	환매 좌수	환매 금액	좌수	금액
2021/01/17~2022/01/16	8,322	8,322	700	731	3,033	3,146	8,501	9,135
2022/01/17~2023/01/16	8,501	8,501	404	367	933	833	8,605	7,413
2023/01/17~2024/01/16	8,605	7,413	255	225	1,119	991	7,742	7,280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 말 잔고 금액은 결산 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좌수	금액	설정 좌수	설정 금액	환매 좌수	환매 금액	좌수	금액
2023/01/17~2024/01/16	0	0	0	0	0	0	0	0

주 1) 이익분배에 의한 재투자분을 포함하였습니다. 기간 말 잔고 금액은 결산 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 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 (세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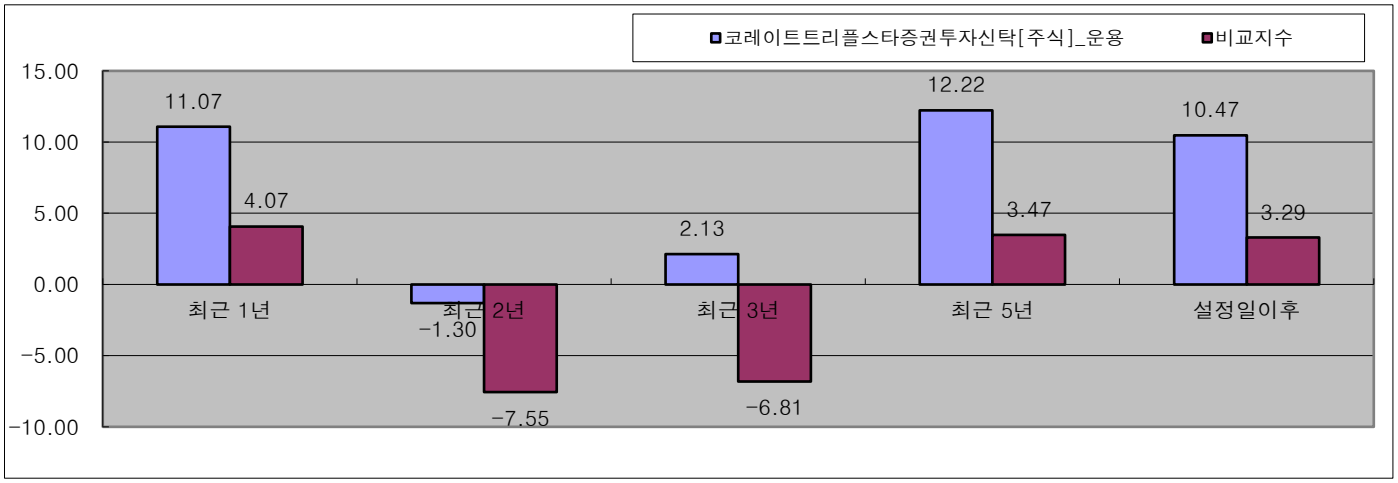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이후

		2023/01/17~ 2024/01/16	2022/01/17~ 2024/01/16	2021/01/17~ 2024/01/16	2019/01/17~ 2024/01/16	(%)
코레이트트리플스타 증권투자신탁[주식]_운용	2006-01-17	11.07	-1.30	2.13	12.22	10.47
비교지수		4.07	-7.55	-6.81	3.47	3.29
변동성		16.38	19.06	17.68	20.75	20.3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2009-08-13	8.64	-3.51	-0.14	9.76	5.98
비교지수		4.07	-7.55	-6.81	3.47	3.28
변동성		16.42	19.11	17.72	20.80	17.9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2010-08-13	10.46	-2.60	0.68	12.58	6.79
비교지수		5.22	-7.04	-6.47	3.69	2.93
변동성		16.42	19.11	17.72	21.26	17.9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2011-08-16	9.02	0.11	1.65	11.08	4.36
비교지수		4.07	-2.39	-2.96	6.00	3.75
변동성		16.42	18.71	17.74	20.80	17.7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2012-08-16	-	-7.02	-2.42	-	3.72
비교지수		-	-9.33	-8.01	-	0.98
변동성		-	8.81	11.16	18.06	16.36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09-07-29	9.21	-2.99	0.39	10.34	6.43
비교지수		4.07	-7.55	-6.81	3.47	3.44
변동성		16.41	19.10	17.71	20.79	17.87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10-01-19	9.38	-2.83	0.55	10.51	5.99
비교지수		4.07	-7.55	-6.81	3.47	2.78
변동성		16.41	19.10	17.71	20.79	17.8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2011-03-03	-	-	-	-1.05	-1.71
비교지수		-	-	-	-0.94	-1.50
변동성		-	-	-	4.67	11.5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2013-08-13	9.21	-2.99	0.39	10.34	5.56
비교지수		4.07	-7.55	-6.81	3.47	2.73
변동성		16.41	19.10	17.71	20.79	18.05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2014-04-22	9.87	-2.39	1.01	11.01	6.58
비교지수		4.07	-7.55	-6.81	3.47	2.41
변동성		16.40	19.09	17.70	20.78	18.43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06-01-17	9.17	-3.03	0.35	10.29	8.92
비교지수		4.07	-7.55	-6.81	3.47	3.29
변동성		16.41	19.10	17.71	20.79	20.35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2023-08-16	-	-	-	-	17.30
비교지수		-	-	-	-	-6.76
변동성		-	-	-	-	20.14

주 1) 비교지수: (KOSPI X 10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주 3)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 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 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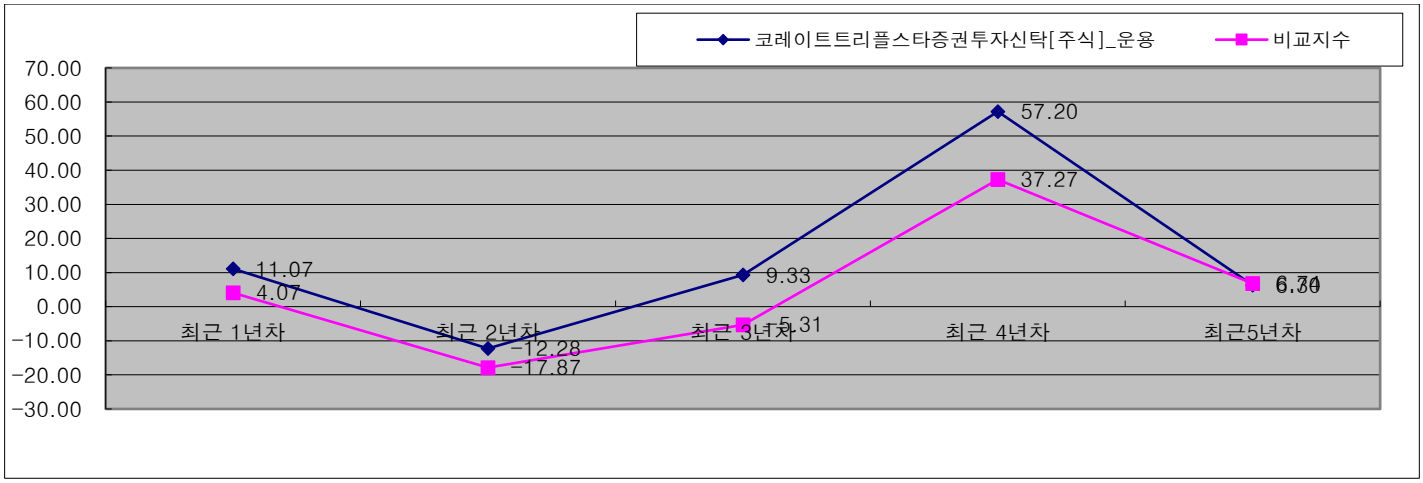

종류	최초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4년	최근 5년
		2023/01/17~ 2024/01/16	2022/01/17~ 2023/01/16	2021/01/17~ 2022/01/16	2020/01/17~ 2021/01/16	2019/01/17~ 2020/01/16
코레이트트리플스타 증권투자신탁[주식]_운용	2006-01-17	11.07	-12.28	9.33	57.20	6.30
비교지수	2006-01-17	4.07	-17.87	-5.31	37.27	6.7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1)	2009-08-13	8.64	-14.30	6.94	53.84	4.00
비교지수	2009-08-13	4.07	-17.87	-5.31	37.27	6.7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2)	2010-08-13	10.46	-14.12	7.57	70.12	4.18
비교지수	2010-08-13	5.22	-17.87	-5.31	37.27	6.7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3)	2011-08-16	9.02	-8.06	4.80	54.32	4.37
비교지수	2011-08-16	4.07	-8.46	-4.10	37.27	6.7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4)	2012-08-16	-	-13.54	7.47	54.89	-
비교지수	2012-08-16	-	-17.80	-5.31	37.27	-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2009-07-29	9.21	-13.82	7.50	54.64	4.55
비교지수	2009-07-29	4.07	-17.87	-5.31	37.27	6.74
수수료선취-온라인(A-e)	2010-01-19	9.38	-13.68	7.68	54.88	4.71
비교지수	2010-01-19	4.07	-17.87	-5.31	37.27	6.7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기관(C-F)	2011-03-03	-	-	-	-	-5.15
비교지수	2011-03-03	-	-	-	-	-4.6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보수체감(C5)	2013-08-13	9.21	-13.83	7.51	54.65	4.55
비교지수	2013-08-13	4.07	-17.87	-5.31	37.27	6.74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2014-04-22	9.87	-13.28	8.16	55.56	5.18
비교지수	2014-04-22	4.07	-17.87	-5.31	37.27	6.74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2006-01-17	9.17	-13.86	7.47	54.59	4.51
비교지수	2006-01-17	4.07	-17.87	-5.31	37.27	6.74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2023-08-16	-	-	-	-	-
비교지수	2023-08-16	-	-	-	-	-

주 1) 비교지수: (KOSPI X 100%)

주 2)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2023. 01. 16. 현재/단위: 백만원, %)

통화별 구분	증권				파생상품		부동산	특별자산		단기 대출 및 예금	기타	자산총액
	주식	채권	어음	집합투자 증권	장내	장외		실물 자산	기타			
대한민국	9,459	0	0	0	0	0	0	0	0	15	299	9,773
	(96.7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15)	(3.06)	(100.00)
자산합계	9,459	0	0	0	0	0	0	0	0	15	299	9,773
	(96.7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15)	(3.06)	(100.00)

주 1) 비중은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대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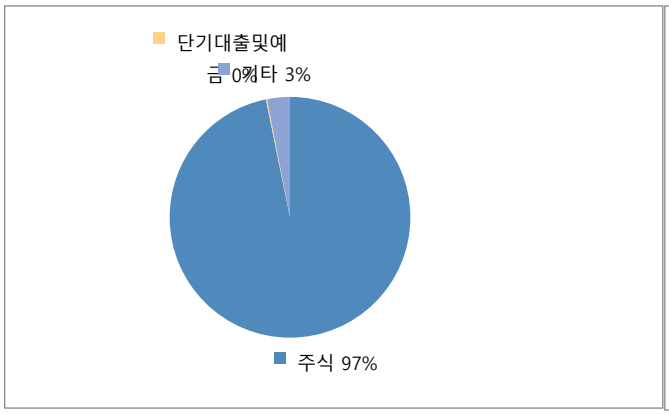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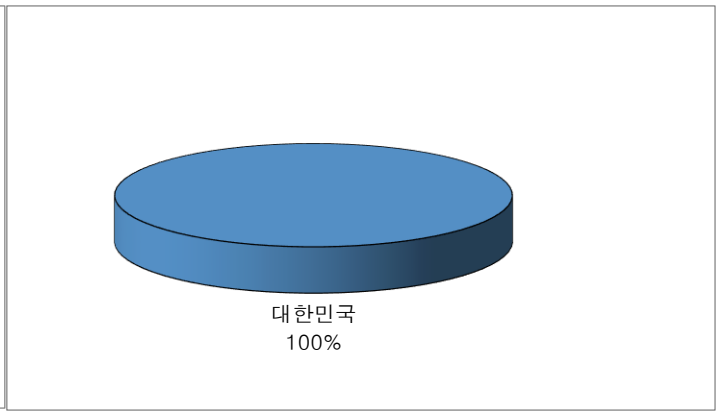

제4부 집합투자기구의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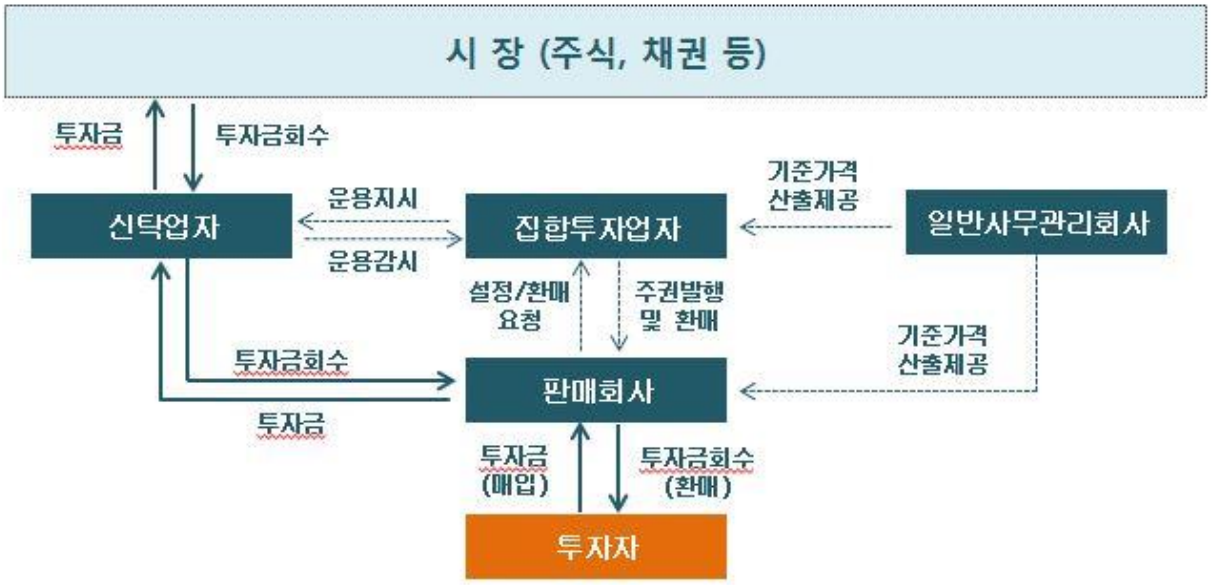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코레이트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37, 9층(역삼동, 코레이트타워) (연락처: 02-3774-6114, www.koreitasset.com)
회사 연혁	-1987.11. 법인 설립 -1999.12. 자산운용업 등록, 마이애셋자산운용투자자문㈜으로 상호변경 -2000.06. 투자일임업 등록 -2007.06. 마이애셋자산운용㈜으로 상호변경 -2016.12. 코레이트자산운용㈜으로 상호변경
자본금	359억
주요 주주현황	한국토지신탁 88.2%

나. 주요 업무

▣ 주요 업무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운용지시 업무를 수행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의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하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는 동 투자신탁에서 부담합니다.

▣ 선관의무 등

①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②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계산으로 행한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한 제비용 및 보수를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에서 인출할 수 있습니다.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의 채무를 수익자의 명의로 부담하게 하거나, 투자신탁재산으로 이를 변제할 수 없습니다.

④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에 대한 채권은 그 자산운용회사의 당해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 책임

①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② 집합투자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한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법령에 의하여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이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이를 판매회사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연대책임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 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기준가격계산업무 등과 관련한 용역제공의 대가로 보수를 받게 되며, 그 보수는 투자신탁재산이 부담하게 됩니다. 본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계산업무를 **하나펀드서비스㈜**에 위탁하였습니다. 업무의 위탁에 대한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 백만 원)

요약 대차대조표			요약 손익계산서		
항목	37기 '22.12.31.	36기 '21.12.31.	항목	37기 '22.12.31	36기 '21.12.31
현금 및 예치금	14,069	8,021	**영업수익**	**18,551**	**15,498**
유가증권	14,546	8,455			
유형자산	2,471	3,650	영업비용	15,921	13,393
기타자산	3,439	2,092			
자산총계	**34,539**	**22,234**	**영업이익**	**2,629**	**2,105**
예수부채	2,179	3,358			
기타부채	2,345	2,679	영업외수익	306	1,045
부채총계	**4,525**	**6,037**	영업외비용	98	288
자본금	35,929	13,601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	2,837	2,862
자본잉여금	4,267	0			
이익잉여금	5,141	2,609			
자본조정	(15,323)	(13)	법인세비용	304	25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0	0	**당기순이익**	**2,532**	**2,609**
자본총계	**30,014**	**16,197**			

라. 운용자산 규모

(단위: 억좌, 기준일: 2024. 02. 20)

구분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재간접	파생형	부동산	특별자산	혼합자산	합계
수탁고	721	1814	4,751	761	149	6,688	1,109	5,630	**21,623**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 개요

회사명	㈜하나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35 (을지1가) 1588-1111
회사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http://www.hanabank.com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투자신탁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신탁재산 운용지시 등에 대한 감시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 무상으로 발행되는 신주의 수령
- 금융투자상품의 상환금의 수입
- 여유자금 운용이자의 수입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2) 의무와 책임

- 신탁업자는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확인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가 위의 요구를 제3영업일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I. 투자설명서가 법령 및 집합투자규약에 부합하는지 여부
  II. 법제8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III. 법제93조제2항에 따른 위험관리방법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IV. 법제238조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 여부
  V. 법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VI.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명세
  VII.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법 제90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법제248호제1항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투자매매・투자중개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이 법에 따라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하나펀드서비스㈜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10층 (04538) 02-6714-4600
회사 연혁 등	2003. 04. 01. 설립

나. 주요 업무

(1) 주요 업무

- 집합투자업자로부터 전달된 운용내역에 의한 투자신탁재산을 평가
-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계산(기준가격 산정업무)
- 집합투자업자에 통보(기준가격의 통보업무)
- 기타 투자신탁재산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자료제공 및 기타업무를 수행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하여야 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과 시행령 그리고 그 하위규정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으며 "수탁 받은 주요 업무내용"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법령, 신탁약관 또는 이 투자신탁의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습니다.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사명	KIS자산평가	나이스피앤아이	한국자산평가
주 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 화재보험협회빌딩 4층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0길 19, 대하빌딩 4층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88 삼환빌딩 4층
연락처	02-3215-1400	02-398-3966	02-2251-1300
연혁 등 (홈페이지 참조)	www.bond.co.kr	www.npricing.co.kr	www.koreaap.com

나. 주요 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 이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및 필요한 경우, 수익증권의 종류별로 종류 수익자총회를 둡니다.
-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① 수익자총회의 소집

-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는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하며, 전자등록기관은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통지하거나, 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의결권 행사를 위한 서면을 보내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소집할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일을 정하여 2주간 전에 각 수익자에 대하여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서를 서면 또는 컴퓨터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의결권 행사방법

-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③ 간주의결권행사

-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합니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집합투자규약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1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④ 연기수익자총회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합니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①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제외)
④ 투자신탁의 합병(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제외)
⑤ 투자신탁의 종류의 변경
⑥ 주된 투자신탁자산의 변경
⑦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 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⑧ 집합투자업자의 변경(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합병·분할·분할합병
나. 법 제42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치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6호로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⑨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⑩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⑪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4) 반대매수청구권
① 반대수익자의 수익증권매수청구권
-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다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법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② 반대수익자 수익증권의 매수방법
- 법 제19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집합투자업자가 제225조의2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191조제3항 본문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매수청구기간의 종료일에 환매청구한 것으로 보아 신탁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수하여야 합니다.

(5) 소규모투자신탁의 합병특례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합병하려는 각각의 투자신탁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법시행령 제223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할 것
2) 법 제229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가 동일할 것
3)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투자목적, 투자전략 및 투자대상자산 등이 유사할 것
-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병을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합병하는 날의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1) 법 제193조 제2항 각 호 (제4호는 제외한다)의 사항
2) 법 제19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수익증권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업자는 위 항에 따라 수익자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업무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나. 잔여재산분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그리고,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을 해당 수익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투자자는 집합투자업자(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투자자에 관련된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장부·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집합투자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됩니다.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집합투자규약·투자설명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금융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주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의 주체]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해당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이 집합투자기구의 규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기준가격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격 변동 등은 협회에서 열람·복사하거나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3) 투자신탁의 피흡수 합병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임의 해지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설정한 후 1년 경과시점에서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경과한 이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설정원본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상기의 3) 내지 4) 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되는 날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와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 전환, 존속 등 처리 계획을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소규모 집합투자기구를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신규 발생을 억제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해소 및 관리 정책, 발생의 사전 억제 정책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가) 해소 및 관리 정책

금융위원회의 "소규모펀드 정리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정리계획을 '임의 해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합병', '모집합투자기구 이전'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수립한 정리계획을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고, 해당 정리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신규 공모 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나) 발생 사전 억제 정책

신규 집합투자기구 등록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에 반영하고, 신규 판매 시 판매사에 해당사실을 알려 투자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규모 집합투자기구가 아닌 모집합투자기구의 자집합투자기구 신설 및 클래스 추가를 위한 경우이거나, 설정 시부터 소규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님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기구 설정 후, 6개월간 집합투자기구의 원본액, 주금, 지분증권 대금의 잔액 등이 15억 원을 초과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당사의 대표 집합투자기구(투자대상자산이 유사한 집합투자기구로서, 당사가 정하는 집합투자기구)로 자동 전환된다는 사실

(2) 집합투자기구 설정 1년 후에 소규모 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는 경우, '임의 해지', '소규모 집합투자기구 합병', '모집합투자기구 이전' 중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정리된다는 사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영업보고서를 아래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1)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상황
2)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표
3)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가 기재된 서류
4)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별 거래금액 및 수수료와 그 비중

[결산서류]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2)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3)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 결산서류는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자산운용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입니다.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2)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운용보고서

-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 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를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투자신탁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 기재사항]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아래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 전신 또는 모사전송, 전자우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2)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3)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4)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규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 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 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 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지만, 자산운용보고서의 경우와 같이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 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등

4) 수익자가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받기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한 경우

5) 신탁업자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나.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법 제230조 제3항에 따라 그 집합투자증권이 상장된 경우만 해당한다)

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6) 수익자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신탁계약에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 분할, 분할합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조에서 정한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제외)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
4)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5)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6)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7)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8)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9)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 (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한다)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수익자 총회를 거치는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2) 수시공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판매회사를 통하여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1)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을 말한다)
2)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4) 수익자총회의 결의내용
5)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6)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및 양수
7)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
8)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로서 설정 및 설립 이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및 설립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집합투자기구가 법 제 192 조제 1 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10)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권의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다음에 따라 공시해야 합니다.

- 합병, 영업의 양도·양수, 임원의 임면, 정관변경 등 경영권 변경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 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 공시대상 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구체적인 사유

※의결권행사에 관한 공시는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법제87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할 것.
-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권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시공시 방법 등에 따라 공시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4) 위험지표의 공시

-해당사항 없음

4. 이해관계인 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이해관계인의 범위]

집합투자업자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와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계열회사의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100분의 30이상 판매·위탁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전체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가 법인이사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단위: 백만원)

거래일	거래상대방	거래내용	거래금액	거래사유
2023-04-27	스타셀렉션[주식]_운용	뉴로메카	0.2107	집합투자기구 환매 대응
2023-04-27	스타셀렉션[주식]_운용	삼성스팩7호	0.24325	집합투자기구 환매 대응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구분	내용
증권거래	1) 선정 시 고려사항 - 운용지시가 효율적으로 체결될 수 있을 것 - 중개회사가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거래유형에 관한 사항 - 집합투자기구 또는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나 수익이 주어진 여건 하에서 가장 유리한 회사 - 중개회사의 재무상황, 규모 등 발생 가능한 리스크 고려 2) 매매대가 이익에 관한 사항 - 특정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하는 매매대가 이익은 해당되는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되어 사용될 것 - 매매대가 이익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 및 중개수수료의 할인 이외의 방법으로 제공될 수 없음 -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중개회사가 서비스 제공자에 직접 지불하여야 함

	[매매대가 이익이 제공될 수 없는 방법] ① 회사 경영관련 비용 ② 리서치와 무관한 정보 및 시스템 제공 ③ 마케팅 비용 ④ 조사분석 세미나 관련 여행비용(숙식비 등) ⑤ 투자운용인력은 매매관련 수수료 및 매매대가 이익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과도하게 증권 등의 매매주문을 하여서는 아니 됨
장내파생상품거래	증권거래의 경우와 같음

주 1) 매매대가 이익: 중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한 대가로 중개회사가 조사분석에 대한 비용이나 운용에 관련된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6. 외국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참고] 펀드용어의 정리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신탁업자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50% 이상을 주권,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 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 시 주권 및 채무증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 시 주권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선취수수료	펀드 가입 시 투자자가 판매사에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규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 놓은 지수입니다. 일반적으로 Active 펀드는 그 비교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목표로 하며 인덱스 펀드는 그 비교지수 추종을 목적으로 합니다.